BNIX 부산은행

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-1164 심의일자 2025.05.29 유효기일 2025.06.01~2025.12.31



LIVE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**통장 또는 증서가**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▶ 상품명 : LIVE 정기예금

▶ 상품특징 :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시면 매월 또는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

2 거래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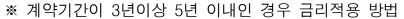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<u>실제 계약</u> <u>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</u>

(2026.06.01현재, 단위 : 연, 세전)

연 1.3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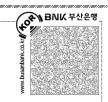
구 분	내용			
가입대상	■ 제한없음			
상품유형	■ 정기예금			
가입금액	■ 최소 1천만원 이상 (제한없음)			
계약기간	■ 1 개월 이상 ~ 60 기	H월 이하 (월 또는 일 단위)		
거래방법	■ 신규 : 영업점,디지털데스크,인터넷뱅킹(단,본부금리승인 받은 법인에 한함)■ 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디지털데스크			
이자지급시기	■ 월이자지급식 ■ 만기일시지급식 (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)			
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	 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·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			
	■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 이율 적용			
	가입기간	구분	연이율(%)	
	1 개월 이상	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	연 1.50% 연 1.40%	
	3개월 이상	만기일시지급식 의이지되고시	연 1.70% 연 1.60%	
	6 개월 이상	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	연 1.80% 연 1.80%	
기본이율	0개월 약정	월이자지급식	연 1.70%	
	1년 이상 2년 이상	만기일시지급식	연 1.95%	
		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	연 1.85% 연 1.60%	
		일이라지급식 월이자지급식	연 1.50% 연 1.50%	
	3년 이상	만기일시지급식	연 1.60%	
		월이자지급식	연 1.50%	
	5 년제	만기일시지급식	면 1.40%	
		워이지지그시	여 1 20%	

월이자지급식



- 3년까지 : 약정이율

- 3년초과 기간 : 3년 경과 시점의 3년제 이율 적용 (이율 변경시에는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 적용 됨)



■「LIVE정기예금」특판(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함)

적용이율

특판기간

이 예금의 기본이율에도 불구하고, 특판 이벤트 기간 중 가입한 이 예금의 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.

구 분	내 용			
가입대상	제한없음 (단, 금리협약기관 및 금융기관은 특판 비대상)			
가입기간	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			
가입금액	최소 1천만원 이상 (제한없음)			
	구분	3개월 이상 6개월 미만	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	12개월
특판이율	기본이율	1.70%	1.80%	1.95%
	우대이율	0.70%	0.60%	0.45%

2.40%

2025.01.01 ~ 2025.12.31

특판 이벤트

- ※ 특판 이벤트 이율은 특판 기간 중 가입한 예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- ※ 특판한도 소진 시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.
- ※ 동 특판 이벤트 우대이율은 중도해지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만기이자 산출근거

■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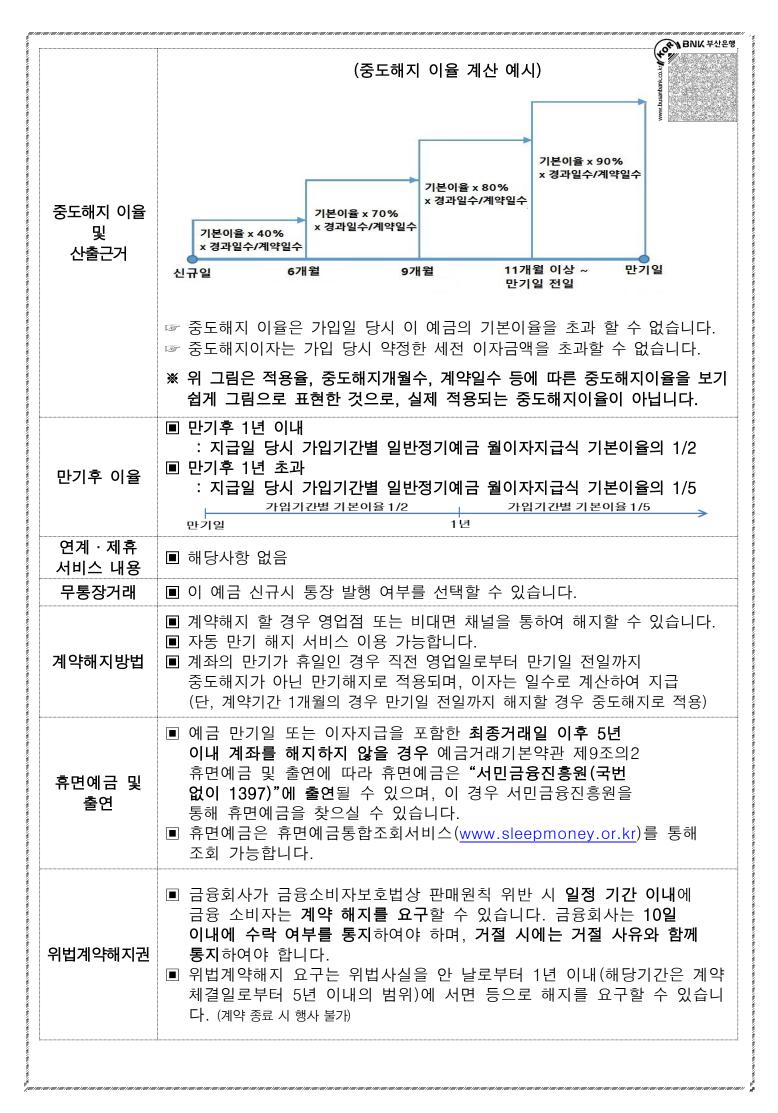
[월이자지급식 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개월수/12 (1년제 기준) [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일수/365 (1년제 기준, 단, 윤년인 경우 366일로 계산)

중도해지 이율 및

산출근거

-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(단, 최저이율은 0.01%)
-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**중도해지할 경우**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**회전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**

예치기간	이 율
6개월 미만	기본이율 x 4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
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	기본이율 x 7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
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	기본이율 x 8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
11개월 이상 ~ 만기일 전일	기본이율 x 9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



자료열람요구권	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※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■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	
양도	■ 이 통장의 양도는 불가합니다.		
질권설정	■ 이 통장의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.■ 예금담보대출은 납입금액의 95% 이내에서 가능합니다.		
재예치	불 가	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.	
분할인출	불 가	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합니다.	
세제혜택	가 능	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)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.	
예금자보호여부	해 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히 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

3 유의 사항

- ▶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부산은행 고객센터(1588-62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busanbank.co.kr)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.
- ▶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구 분	고정금리	변동금리
운용형태	금리	금리
특 징	■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	■ 일정주기(3,6개월 등) 마다 예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
장 점	■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	■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
단 점	■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	■ 시장금리 하락기 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

※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

용 어	내 용
압 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 연	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
문의사항 및 민원상담	영업점	당행 홈페이지 '영업점 찾기'참조
	고객센터	1544-6200/1588-6200
	인터넷 홈페이지	www.busanbank.co.kr
분쟁조정	금융감독원	국번없이 1332
	e-금융민원센터	www.fcsc.kr
상품 개발부서	개인고객부	051-620-3328

BNIK 부산은행